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10 발의연월일: 2024. 10. 2.

발 의 자:김민전・인요한・박덕흠

조배숙 • 유용원 • 박수민

김태호 • 이철규 • 이주영

안철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관례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인 위원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원장으로 호선되었으며, 비상임 명예직인 위원장직을 겸임해 왔음.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에 대하여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국가기능상 특수행정분야인 선거관리업무의 최고책임자를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법관이 맡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함 (안 제49조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9조제7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각급선거관리위원 회 위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금지사항) 법관은 재직 중	제49조(금지사항)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	
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 <신 설></u>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
	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
	<u>원이 되는 일</u>
<u>7.</u> (생 략)	<u>8.</u> (현행 제7호와 같음)